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여러분께

주주님의 건승과 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3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11월 18일(수요일) 오전 09시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판교이노밸리 C동 지하1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 이영무, 재선임)

3) 제3호 의안 : 독립이사 선임의 건(후보 강진양,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선임)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명의개서대리인)에 비치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참석에 의한 행사

- 본인이 직접 의결권 행사시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시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기명날인 및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사본 혹은 인감증명서 등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나. 서면결의에 의한 행사

주주님께서는 첨부하여 드린 서면결의 용지에 의안별 찬·반을 표기하시어 주주총회 전일인 2026 년 11월 17일까지 당사에 도착하도록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를 위한 투표용지와 참고자료를 첨부하니 의결권 행사 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 참석자 지참물 안내

가. 본인 : 본인 신분증, 주주총회 참석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분증 등 제출서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도 참석자의 본인 여부나 대리인의 대리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주총회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인감날인(인감증명서 1부)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 금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별도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임시주주총회 관련 문의사항은 070-4248-99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3일

주식회사 티디에스팜 대표이사

김 철 준 (직인생략)

임시주주총회 의안 참고 자료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50,000,000주로 한다.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발행주식의 종류와 종류별 조건 및 한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7.「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5.「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사유 및 대상의 정비, 상장 완료에 따른 신규상장 관련 조항 삭제 및 문구 정정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상법」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상법」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2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인용 조항 정정(제3항 → 제2항)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삭제)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정비에 따라 제2항 삭제
제13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3조(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의무의 예외 및 보유처분계획 승인 제도 반영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제15조(기준일)** ①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기준일 관련 규정 정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삭제)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개월(공모 이외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개월(공모 이외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화사채 청구기간에 관한 용어 오류 정정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 개정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전자문서 추가
제33조(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보존, 비치한다.	**제33조(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보존, 비치한다.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의사록의 비치 장소를 본점 및 지점으로 정비
제34조(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1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4조(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명칭 및 최소 선임비율 변경과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최소 인원 정비
제37조(이사의 의무) (신설) (신설)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사전에 지정한 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	**제37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사전에 지정한 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및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의무 반영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감사의 직무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감사의 직무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사의 의무 조항 개정에 따라 감사에게 적용되는 준용규정의 범위 정비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 또는 지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상법에 따라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비치 장소와 기간 정비
제55조(이익배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5조(이익배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3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④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 시 배당결의 권한 명확화 및 배당기준일의 별도 설정 근거 마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례

□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독립이사 후보자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영무	1965.07.22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없음
총 (1) 명					

※. 사내이사 선임의 경우 재선임에 해당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영무	급여소득자	2013.06 ~ 현재	티디에스팜 연구소장	해당사항 없음

※. 세부경력은 후보자의 최근 10년간 경력임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영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제3호 의안 : 독립이사(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독립이사 후보자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강진양	1959.09.27	독립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없음
총 (1) 명					

※. 이전 독립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 선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강진양	대학교수	1997.03 ~ 2025.02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해당사항 없음
	약사	2025.03 ~ 현재	개업 약사	

※. 세부경력은 후보자의 최근 10년간 경력임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강진양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직무 수행

본 후보자는 약학대학 교수로서 축적한 약제학 및 의약품 제제·약물전달 분야의 연구 경험과 약학대학 학장 등 조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이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과 연구개발 방향, 생산 및 품질 관련 주요 안건을 전문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2) 독립적인 판단과 경영 감독

경영진 및 특정 주주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사회 안건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와 신규 사업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 위험을 충분히 살피고, 실질적인 조언과 견제 역할을 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 주주 권익 보호 및 경영 투명성 제고

회사와 전체 주주의 공동 이익을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와 주요 경영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이사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4) 성실한 이사회 참여와 책임 이행

이사회에 충실히 참석하고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사업 현황과 제약산업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며 독립이사로서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주주총회 참석장

※ 소유주식수

명부주주	
실질주주	
주식수계	
의결권수	
무의결권수	

(주) 티디에스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합니다.

일시	2026/11/18 (수) 오전 09시 00분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판교이노밸리 C동 지하1층 대회의실

주주정보

구분	내용
주주명	
주민(법인)번호	

소유주식수

구분	내용
주식수계	
의결권수	

※.유의사항

- 주주총회 참석자는 해당 참석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본사 (031) - 8018 - 7337 / 주주총회담당자 070 - 4248 - 9984

tds 티디에스팜

[주주가 지정하는 대리인]

위 임 장

본인은 2026년 11월 18일에 개최하는 ㈜티디에스팜 임시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 서 아래 지정된 대리인이 본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주주 정보

구분	내용
주주명	
주민(법인)번호	

□ 소유주식수

구분	내용
주식수계	주
의결권수	주
위임할 의결권수	

□ 대리인 정보

구분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주와의 관계	

□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 이영무, 재선임)
- 제3호 의안 : 독립이사 선임의 건(후보 강진양, 이전 독립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선임)

□ 참조 : 위임장과 함께 제출할 본인 증명서류

- 개인주주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사본(또는 개인인감증명서)
- 법인주주 : 주주총회 참석장,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2026년 11월 일

주 주 : (인)